



뉴욕시 헌장개정위원회(The New York City Charter Revision Commission)는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회의에서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및 11월 투표 기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본 결의안은 실제 투표 기준이 아니며, 이달 말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제안된 헌장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기제한

-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구청장, 시의회 의원에 대한 연속 전체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한다.
- 현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임기 제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임기 제한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시의회의 지역법 실행을 금지한다.
- 2선 임기 제한은 2013년 11월 5일 이후 1기 전체 임기로 선출된 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실시한다.

선거

선거자금공개

- 1천 달러(\$1,000) 이상의 독립 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은 선거재정위원회(Campaign Finance Board, CFB)에 자금을 공개해야 하며, CFB에 5천 달러(\$5,000) 이상의 독립 경비를 지출하는 기관에 대해 자금 출처 공개를 요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독립 경비로 자금을 조달한 특정 인쇄물 또는 광고에 대해 해당 경비를 제공한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피선거권

-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구청장 및 시의회직에 대한 청원서의 필수 서명인원을 오십 퍼센트(50%) 정도 축소한다.

선거지원

- 선거지원위원회(Voter Assistance Commission, VAC)를 “선거지원자문위원회(Voter Assistance Advisory Committee)”로 개편하고 선거재정위원회(CFB) 산하로 편입한다.

공공청렴

- 뉴욕시의 이해상충법 위반과 관련하여 건당 최대 벌금을 만 달러(\$10,000)에서 이만 오천 달러(\$25,000)로 인상하고, 위반의 결과로 획득한 모든 부당 수익의 반환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며, 뉴욕시의 모든 공직자에 대해 뉴욕시 이해상충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행정

심판

- 행정 명령에 따라 시장에게 다양한 행정 심판의 판결 기능을 단일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통합을 수행하기 위해 명령을 발행하고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며, 뉴욕시 행정심판 및 공청회 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OATH)에 OATH로 전임한 행정판사에 대한 대체 요건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고요건

- 보고 요건 및 자문 기관의 유용성을 연구하고 시의회 및 시장에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요건 및 기구의 철회와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창설한다.

공정분배

- 뉴욕주 또는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뉴욕시와 동등한 자격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 및 폐기물 관리 시설의 위치가 모두 포함된 뉴욕시 요구서를 동반하는 뉴욕시 소유 시설에 대한 지도를 요구한다.